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 준수사항 마련

김정우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 「개인정보보호 지침」 6월 1일부터 시행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사장은 최근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선전을 하자 회원수가 일주일 동안에 수십 배가 늘어나고 매출액이 100배로 늘어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제 나도 뜨는구나, 내 회사도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보통신부와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이 나왔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 받지 않았으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옆집의 이 사장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팔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 사장이 운영하던 인터넷쇼핑몰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위의 사례는 조금 과장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예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2000년 5월 말 현재 1,500만명에 육박한 현실점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출하거나 오·남용하지는 않는가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

도를 마련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런데 법의 내용은 어렵고 매우 추상적이어서 전자상거래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동안 공청회 개최(3월 7일)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을 5월 1일 제정하였으며, 통신사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모두 7장 2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법률에는 없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적용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 웹캐스팅업자(인터넷방송사), 포털사이트 운영자, 증권정보제공자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인터넷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제1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대리점도 간접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제26조).

▶ 지침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

집·취급하는 경우라면, 그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제3조).

###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성생활 등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제4조).

▶ 개인정보수집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도록 하였고,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제5조).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백신 프로그램, 암호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10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제11조).

▶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로서 종이로 출력된 것은 분쇄 또는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것은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파기하도록 하였다(제13조).

▶ 개인정보의 처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계약에 개인정보관련 책임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





다(제14조).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도록 하였다(제17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조).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기술적·관리적 대책,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절차 등을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제19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소속 관련 직원에 대하여 개인정보관련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제20조 및 제21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 지침을 준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제22조).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제24조).

▶ 법정대리인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제25조).

정보통신부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지침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설자료를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에 5월 1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침과 해설서를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내용을 법제화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